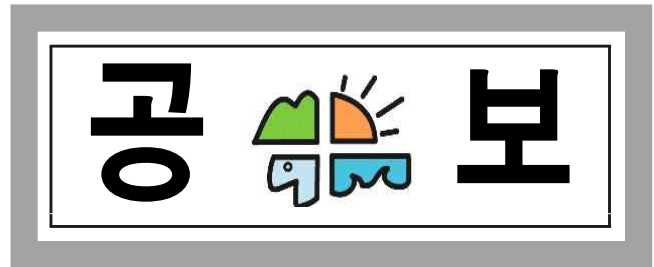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15호 2012년 8월 7일(화)

공 고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9
-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5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제3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과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관리의 일반원칙 등(안 제4조)
- 다. 지형도면 고시사항을 등(안 제5조)
- 라. 표지판 설치 등(안 제6조)
- 마. 침수위험지구 행위제한 등(안 제7조)
- 바. 붕괴위험지구 행위제한(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복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복구담당(전화: 033-639-2989, FAX: 033-639-258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담당자 박용문(전화:033-639-29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지상위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를 포함한다)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

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 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등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등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② 제1항제1호의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이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속초시청, 전화: 639-2989) 속초시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 (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설치 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 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속초시청, 전화: 639-2989) 속초시장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 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 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을 둠(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3조).

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안 제4조).

마.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안전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안 제6조)

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안 제9조)

사. 위원회는 안전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8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전화: 033-639-2261, FAX: 033-639-2385)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지적정보담당 (전화:033-639-22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사업지구가 두개 이상의 행정동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동장 수만큼을 초과하여 재적위원수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해당동의 동장인 위원은 심의·의결 안건의 의결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전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062호 시행 2012. 3. 17]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다.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 구성

라.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임기 (안 제4조)

-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

마.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안 제9조)

-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통지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사.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안 제11조)

-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8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전화: 033-639-2261, FAX: 033-639-2385)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지적정보담당 (전화:033-639-22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②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속초시장이 지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사업지구가 두개 이상의 행정동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동장 수만큼을 초과하여 재적위원수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동의 동장인 위원은 결정안건이 의결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062호 시행 2012. 3. 17]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전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